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(요약)

2018. 12.

금 융 위 원 회

1 추진 배경

- □ 現정부 출범 직후,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채무·이 자부담 경감 등 시급한 과제를 중점 추진
 - o 全금융권 참여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에 시달린 **322만명** 한계차주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(약 32.7조원)을 소각
 - o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 상환 불가능한 채무로 고통받는 58만명(연대보증인 포함) 장기·소액연체자의 연체채무를 일괄 면제·감면
 - o 그 밖에도 **최고금리 인하**(18.2월, 27.9%→24%)로 약 **200**만명 저신용층의 고 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,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감독강화^{*} 추진
 - * 범부처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('18.2~4월)으로 1,112명 검거, 광고제한 등 대부업 규제강화 등
- □ 취약차주에 대한 **긴급지원**은 **상당부분 이행**된 만큼, 이제는 **서민·취약계 충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**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의 **확산 추진**
 - o 우리 서민금융지원체계는 [●]서민층 자금지원과 ^❷신용회복지원 제도로 구 성되며 **단기간에 급속한 양적 성장**을 달성
 - [●]연간 총 55만명에게 7조원 규모로 10%이내의 低利 정책자금을 지원
 - ²신용회복제도(채무조정)는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과 별도로 금융권 협약에 기반하여 연간 9만명 채무경감 지원(연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인원 약 40만명)
 - o 반면, 질적 측면에서는 대출부실 가능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금융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지원효과 반감
 - [●]20%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들은 **사실상 자금지** 원에서 제외되고, [●]채무조정은 채무자 재기보다는 **채권회수를 우선시**
 - ➡ 포용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기 위해, 저소득·저신용층의 삶에 체감

 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
 - ※ '18.6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음

2 기본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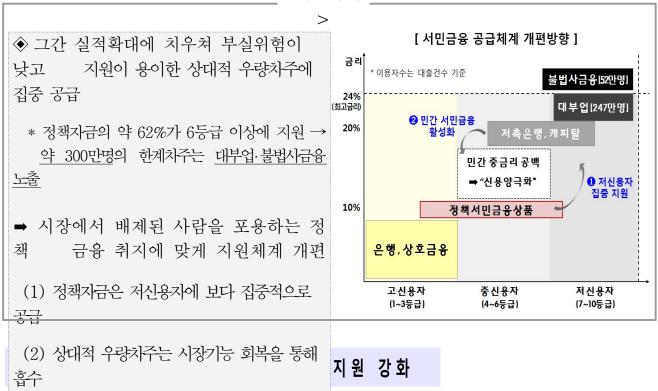
- 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공조를 바탕으로, 실제 서민층에 체감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
- ◆ 1 서민자금 공급체계, ② 신용회복 지원제도, ③ 전달체계, ④ 재원 등
 4대 부문에 걸친 20대 추진과제를 마련
 - ① 정책서민자금은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 하되,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층 전반의 금융부담 완화
 - ② 채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 지대를 축소하여 취약차주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
 - **3** 보다 많은 서민층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
 - ④ 금융권 상시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

부문		추진과제		
0	1	저신용층 대상 "긴급 생계, 대환자금 신설"		
서민자금	2	정책 서민금융상품 금리 조정		
공급체계	3	서민 특화 신용평가체계 마련		
개편	4	서민금융 플랫폼 기능 강화		
9	1	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 도입		
신용회복 지원제도	2	채무감면율 산정기준 개선 (감면율 확대)		
	3	법원 개인회생 등과 연계 강화		
	4	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		
개선	5	통신채무 등 비금융 채무조정 도입		
	6	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강화		
	7	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		
8	1	상담센터 정비 및 관리 효율화		
서민금융	2	종합 재무진단 기능 도입		
전달체계	3	채무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 강화		
개선	4	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		
	5	미소금융 운영체계 정비		
0	1	금융기관 상시 출연제도 도입		
안정적	2	휴면 금융자산 활용 확대		
재원확보	3	금융권 장기 미거래 자산의 신규 활용		
	4	재원의 통합활용 강화		

3 부문별 주요 과제 [] 괄호안은 본 보고서상의 과제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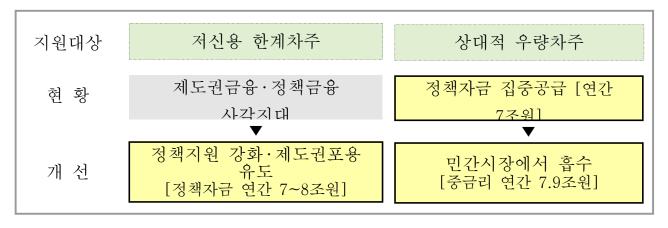
①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

<기본방향



- □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·사금융 등에서 **20% 중반 고금리** 이용이 불가피한 **저신용자를 대상**으로 하는 **정책상품 신설**[1-1]
 - o 대출당시 금리는 **10%** 중후반대로 하되, 성실 상환시 매년 **1~2%p** 금리 인하 → 만기(3~5년)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
 - ※ 현재 최고 24%로 공급중인 유사 정책상품('안전망대출')의 금리를 10%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 완화 [부실이 큰 바꿔드림론('18.6월, 대위변제율 29%)은 신규상품에 흡수·통합]
 - o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, 상환여력 뿐 아니라 자금용도, 상환계획·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,
 -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**자금지원** 前 **재무진단을 의무화** 하고 **채무조정·고용·복지서비스**를 **연계 지원***
 - * (예) 자금지원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연체 상환 목적인 경우 채무조정 상담으로 연계
 - ➡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 유도(우선 연간 1조원 수준 공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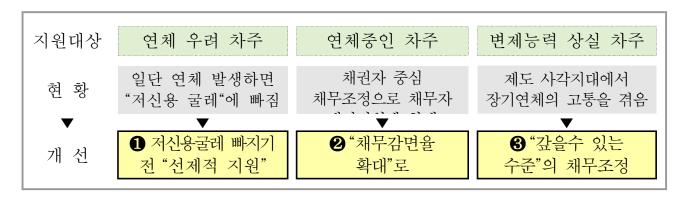
- (2) <u>상 대 적 우 량 차 주</u> 는 시 장 에 서 흡 수 할 수 있 도 록 민 간 중 금 리 대 출 을 활 성 화 하 되 , 現 정 책 상 품 의 과 도 한 혜 택 은 점 차 축 소
- □ 現 정책상품(금리상한 10.5%) 이용자들이 **큰 부담없이 시장으로 이동**할 수 있도록 **민간금융시장^{*}의 10%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** ('19년중 **7.9조**)
 - * 그간 민간금융기관은 중·저신용자에 대해 **일괄적으로 20%대 고금리** 부과("중금리 공백")
 - o 서민특화 CB업 도입* 등을 통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(신규 CB업 인가 추진) [1-3]
 - * 정책상품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,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활용,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 정보도 적극 활용 → 중·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마련
 - o 서민대출 비교·평가서비스를 확대·제공*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 [1-4, 3-3]
 - * 정책·민간상품을 망라하여 선택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수준·대출한도 등을 비교·제공
 - o **감독상 인센티브 강화, 보증부 중금리대출**('사잇돌대출') **공급 확대** 등 중금리 활성화 노력 지속
- □ 추후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, 現 정책상품은 금리조정 등
 혜택을 점차 축소^{*}[1]-[2]→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
 - *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자의 금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부작용 최소화
- ※ 내년 정책상품 공급은 최근 공급수준(7조원)을 유지하되, 수급자 전환과정 에서의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대 1조원 추가공급여력 확보



②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

(1) 연체발생 단계별 차주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 마련

- □ <u>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</u>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**연체 발생전** 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"상시 채무조정제도" 도입[②-1]]
 - o 현재 **연체등록·신용등급 하락**이 이루어진 **연체 90일 이후**에나 채무조정 신청 가능 → **연체우려 단계**에서부터 **신용상담·채무조정**을 지원
 - * 현재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, 다중 채무자의 경우 직접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해야하는 불편 ⇒ **全 금융권 채무**에 대한 **원스톱 신속 지원**
-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
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*('17년 29%→'22년 45%)[②-②]
 - * 최대감면율 상향 조정(60%→70%), 미상각채권의 감면 허용(현재 상각채권만 감면) 등
 - o 최근 법원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('18.6월, 5년→3년)을 통해 감면율을 높인 점을 감안, 금융권 자율의 채무조정제도도 채무자 지원기능 강화
 - o 채무자가 개인회생(법원), 채무조정(신복위)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·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(제도별 감면율 비교제공 등)[2-3]
- □ <u>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</u>의 경우 **일정기간**(예:3년) 성실상환시 **잔여채무를 면제**하는 **특별감면제** 도입[②-④]
 - o 현재 신용회복제도(개인회생·채무조정)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만 이용 →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변제능력 상실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
 - ※ '17.10월말 기준, 1천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 중인 '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(17.11월)'을 제도화·상시화



□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 추진[2-5] □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 실시 [2-6] * 현재는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이 채무조정에 소극적 → 통일적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 유도 ☐ **주택담보채무**에 대한 **채무조정을 활성화**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인 주거 여건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[2-7] *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 경매실행을 유예 토록 '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' 신설 (법원 협의중) □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추가 검토(신용질서 훼손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방안 마련, 전문가 논의 추진) 성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(1)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·전달체계 구축 □ 정확한 상담·지원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상담센터 통합·정비[3-11] * 현재 전국 106개 센터가 존재하나 상담수요 편차가 킘(상담사 1인당 1일 1~2건 상담하는 경우도 빈번) → 센터 정비로 효율성을 높이되. 센터간 유기적 연계로 시각지대 발생 방지 □ 종합*재무진단 기능을 도입[3-2]하고, 소비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 강화[3-3]하여 맞춤형 지원 기능 강화 * 현재 소비자의 재무상황과는 무관히 스스로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응답 위주로 상담(ex. 채무조정이 필요한 연체차주에게 대출상담) □ 전문적인 신용상담 인력을 확충·공급하고 신용상담 서비스 산업 육성 (·19년중 민간 신용상담기관 시범사업 추진)[**3**-4]

(2) 기타 신용회복의 사각지대 완화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

(2) 미소금융 책임성 · 투명성 강화

- □ '08년 시작된 미소금융은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태조사와 외부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·투명성을 강화[3-5]
- 미소금융은 **다양한 민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**하고 있으나, **부실 확대**** 등 **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부조화 문제**가 제기
- * 기업·은행재단(11개), 지역법인(38개), 민간 사업수행기관(16개), 전통시장 상인회(498개) 등 ** (예)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대출은 '17년말 연체율이 33.4%
- **'19년중 전수 실태조사**를 통해 **사업내용·운영방식, 사업지속 역량·의지** 등을 종합분석하고, **전문가 의견수렴**을 거쳐 **처리방안** 확정
- 실태조사 결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**외부평가**를 실시, 지역법인·전통시장 상인회의 경우 평가결과를 사업비·운영비 교부와 연계

②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

- □ 全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 도입[4-1]
 - 현재 **일부업권**(저축은행·상호금융)만 **한시적** 출연(16~24년까지 총 9천억원) → **은행** 등 **출연대상 기관을 확대**하고 **상시 출연제도로 개편**(연 2~3천억원 수준)
- □ 현재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 중인 **금융권 휴면자산**(예금·보험금 등)의 **출연대상 기관^{*} 및 출연자산범위^{**} 확대 [4**-2]
 - * 은행·저축은행 → **상호금융** 포함, ** 상호금융 등의 **휴면 자기앞수표**(현재 은행권만 출연)
- □ **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***의 운용수익 **신규 활용**[**4**-3]
 - * **종래 5년이상** 미거래자산은 **휴면계좌로 보아 출연**했으나, 시효 관련 판례('12년)의 영향으로 **현재 10년이상 미거래시** 출연→5~10년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은 금융사 수취 중
 - ※ 원권리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권리자 반환청구권 및 '주인 찾아주기' 사업 강화
- □ 재원의 신축적 활용을 위한 통합 활용방안 마련[4-4]
 - * 현재는 금융기관 출연금·휴면자산·기부금 등 재원별로 활용처가 정해져 통합활용 곤란
- ※ 재정투입은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예산당국·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 추진 (16~20년 복권기금 매년 1,750억원 출연 중)

4 향후 추진계획

- □ 추후 이해관계자·국민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후 **'19**년중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
 - * ① 정책서민자금 공급체계, ② 신용회복 지원제도, ③ 서민금융 전달체계 등 3대 분야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
 - * 4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'19년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합의
- □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**대부분의 과제가 '19~'20년중 시행**될 수 있도록 준비

<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>

부문	추진과제	시행시기	
	① 저신용층 대상 "긴급 생계·대환자금" 신설		
1.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	②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조정	'19년중 시행	
	③ 서민 특화 신용평가체계 마련		
	④ 서민금융 플랫폼 기능 강화		
2. 신용회복	①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 도입		
	② 채무 감면율 산정기준 개선 등		
	③ 법원 개인회생 등과 연계 강화		
지원제도	④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	'19년중 시행	
개선	5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도입	·채무 채무조정 도입	
	⑥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강화		
	⑦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		
	1 상담센터 정비 및 관리효율화		
3. 서민금융	② 종합 재무진단 기능 도입	'19년중 시행	
전달체계	③ 채무자별 최적상품 추천 기능 강화		
개선	④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	'19년중 시범사업 추진	
	⑤ 미소금융 운영체계 정비	'19년중 실태조사방인확정	
	① 금융기관 상시출연제도 도입		
4. 재원확보	② 휴면 금융자산 활용 확대	'19년중 협의 추진	
방안 마련	③ 금융권 장기 미거래자산 신규활용		
	④ 재원의 통합활용 강화		

<[참고] 정책 수요자별 대응 기본방향 >

구 분 현 황 문제점 대응 기본방향

1. [서민자금공급] 담보대출 우량치주 중심의 신용 양극화 ➡ 서민 자금공급체계

고신용 우량차 주

- 1~3등급 2,251만명 (全국민의 50%)
 (연체 없이 장기간 신용거래)
- 전체 신용대출의 61.6%(주담대 포함 전체 대출의 70.9%)
- 은행 등에서 저금리 자금 이용
-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대출 우려
- 부동산·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
- 가계부채 안정화관리 필요

중신용 서민층

- 4~6등급 **1,851만명** (41%) (신용거래 실적 부족)
- 전체 신용대출의 26.4%(주담대 포함 전체 대출의 25.5%)
- 저축은행·카드사 등에서 20%대 고금리 이용(중금리 공백)
- 실제 신용위험대비 과도한 금리부담
- 특히, 신용실적이 부족한
 청년·주부 등이 불이익
 (20대의 64%가 중신용자)
- 민간서민금융역할 강화
- *서민특화 신용평가체 계
- * 서민대출 금리비교 강 화
- * 중금리확대 유도

저신용 취약차 주

- 7~10등급 **412만명** (9.0%) (연체 중/과거 연체기록 有)
- 전체 신용대출의 12.1%(주담대 포함 전체 대출의 3.6%)
- 대부업 등에서 최고금리(24%)이용
- 과거 연체이력으로 재차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('빚의 굴레')
-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 확대
- * 저신용자를 위한 생계·대환자금 신설
- 2. [신용회복] 장기연체일수록 신용회복 가능성 저하 ➡ 갚을수 있는 수준에서 신

연체우 려 차주

- 은행권 자체 사전채무조정 이용자('17년중) 16.2만명
- 실업·폐업·질병 등에 따른 연체 우려 차주
- 일시 유동성 문제가장기연체화될 기능성
- '빚내서 빚깊는' 악순환
- '빚의 굴레'에 빠지기 前 선제적 지원
- * 상시채무조정제도

연체중 인 차주

- '17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(90일이상 연체) **94.3만명**
- 신용도 하락 등 낙인효과로 경제적 재기의 어려움
- 채권금융회사 중심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자재기 효과 제약
-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설계
- * 채무감면율 확대 드

변제능 력 상실차 주

- **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40**%는 7년이상 초장기 연체化
-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 회생·채무조정 이용이 어려움
- 제도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고통
- 갚을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감면
- *소액채무자 특별감 면
- 3. [재원·전달체계] 보다 많은 서민층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수 있